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179
----------	-------

발의연월일 : 2026. 6. 11.

발 의 자 : 허 영 · 김남근 · 이해식
박상혁 · 박용갑 · 한민수
진성준 · 서삼석 · 소병훈
문진석 · 김영환 · 김 윤
박지원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스토킹범죄, 성폭력범죄, 가정폭력, 아동청소년성범죄 등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의로 현금을 이체한 후 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채권·채무관계를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스토킹범죄, 성폭력범죄, 가정폭력, 아동청소년성범죄 등 가해자는 채권·채무관계가 있더라도 법원의 촉탁이 있는 경우가 아닐 경우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등을 못하도록 하여 가해자의 무분별한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표 열람에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9조제6항 등).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가정폭력피해자등의”를 “사유를 서면으로 알린 후 가정폭력피해자등, 스토킹범죄피해자등, 성폭력피해자등, 피해아동·청소년등의”로,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제한대상자가 가정폭력피해자등의”를 “그 제한대상자에게 사유를 알린 후 제한대상자가 가정폭력피해자등, 스토킹범죄피해자등, 성폭력피해자등, 피해아동·청소년등의”로,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와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스토킹범죄피해자등”이라 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와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성폭력피해자등”이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및 그 보호자(이하 이 조에서 “피

해아동청소년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도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
· 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단,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른 법원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른 법원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법
원의 촉탁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제한조치의 사유를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하고 제한대상자가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교부하지 아니하는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단서 신설>

⑨ · ⑩ (생략)
<신설>

⑪ (생략)

-----그 제한대상자에게 사유를 알린 후 제한대상자가 가정폭력피해자들, 스토킹범죄피해자들, 성폭력피해자들,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단,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른 법원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 ⑩ (현행과 같음)

⑪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법원의 촉탁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제한조치의 사유를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⑫ (현행 제11항과 같음)